

2020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4. 10. (금요일),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김영운, 정형호, 한경자, 한상일, 허순선, 심승구, 양종승, 유영대, 정종수(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검토사항】

1	‘숫대쟁이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2	‘기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3	‘지리산 남악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4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5	‘국궁’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6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7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8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9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 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비공개
10	종묘제례악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검토	공개
11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의 일무 원형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각설이 연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결과 보고	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선정 보고	공개

검 토 사 항

1. ‘숫대쟁이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숫대쟁이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 및 무형문화재 위원회 검토('18.2.2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목 지정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종목 및 추진경위

- 신청종목 : 숫대쟁이놀이(비지정)
 - 경상남도, ‘숫대쟁이놀이’ 신규 지정종목 신청('16.11.9.)
 -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 수립('17.1.26.)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17.10.23.~12.8.)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
 -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 검토('18.2.23.)
 - 의결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시까지 판단을 보류함.
- ※ '18~'19년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판단되어 기 보류 건에 대해 재상정함.

2) 조사결과 : 비공개

3) 조사자별 검토의견(요약) : 비공개

라. 검토의견

- 솟대쟁이놀이의 대중성과 신청 단체의 기여, 복원노력, 열정 등은 높이 평가하나, 솟대쟁이놀이가 1936년 해체된 후 2004년 복원을 시작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18년도 제2차 무형문화재위원회('18.2.23.)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까지 지정가치 판단을 보류한 바 있음.
- 그러나, '18~'19년까지 2차례의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 상태에서 '솟대쟁이놀이'의 지정가치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10명, 가결 10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 없음.

2. '기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기사(騎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18.2.2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목 지정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종목 : 기사(騎射)(비지정)

2) 추진경위

- 강원도, '기사(騎射)' 신규 지정종목 신청('16.11.15.)
-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 수립('17.1.26.)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17.10.23.~12.8.)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
 - 조사결과 : 비공개
-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 검토('18.2.23.)
 - 의결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까지 판단을 보류함.

3) 조사자별 검토의견(요약) : 비공개

라. 검토의견

- 1910년부터 대략 100여년 정도 전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현재 행해지는 기사는

전승되던 전통문화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복원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조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 '18년도 제2차 무형문화재위원회의('18.2.23.)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까지 지정가치 판단을 보류한 바 있음.
- 그러나, '18~'19년까지 2차례의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 상태에서 '기사'의 지정가치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 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10명, 가결 9명, 회피 1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 없음.

3. ‘지리산 남악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지리산남악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18.12.2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목 지정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종목: 지리산남악제(비지정)
- 2) 추진경위
 - 전라남도, ‘지리산남악제’ 신규 지정종목 신청(’16.11.8.)
 -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7.1.26.)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18.1~2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
 - 조사결과 : 비공개
 -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 검토(’18.2.23.)
 - 의결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 까지 판단을 보류함.
- 3) 조사지표별 검토의견(요약) : 비공개

라. 검토의견

- 복원·재현한 지리산 남악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역의 전승의지 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제의 날짜·장소 등은 중사(中祀)와는 무관해 보이며, 제물에는

민속신앙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례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조사자 의견이 있음.

- '18년도 제2차 무형문화재위원회의('18.2.23.)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까지 지정가치 판단을 보류한 바 있음.
- 그러나, '18~'19년까지 2차례의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 상태에서 '지리산남악제'의 지정가치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10명, 가결 10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 없음.

4.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단양구인사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단양구인사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9.7.25.~12.18.)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3.)
- '단양구인사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9.7.25.~12.18.)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7.25.~12.18.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결과 : 비공개

4) 조사내용 : 비공개

라. 검토의견

- 생전예수재는 한국 불교의례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유일한 성찰(省察) 참회형 의례로 내용적 고유성 및 불교문화의 대표성은 확인되나 생전예수재의 역사성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생전예수재는 종단과 무관하게 전국의 불교 사찰에서 윤달마다 열리는 불교의례로 여러 종단에서도 생전예수재를 연행하고 있음.

제의명	전승지역	종단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단양구인사생전예수재	충북 단양 구인사	천태종	-
생전예수재	서울 봉은사	조계종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19.10.10.)
청련사 시왕생칠재	경기 양주 청련사	태고종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진행 중
밀양 작약산 예수재	경남 밀양 광제사	태고종	경남 무형문화재 제45호('19.8.1.)

-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는 1982년에 처음으로 설행하여 그 역사성이 짧고 생전예수재의 의례적 표현미, 핵심 기·예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범패의 전승 기량이 미흡하다는 의견, 다른 종단에서 전승하고 있는 생전예수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10명, 가결 10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 없음.

5. '국궁'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7.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8.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9.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0. 종묘제례악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종묘제례악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묘제례악의 일제강점기 왜곡 논란에 대한 민원 조치사항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민원 개요

- 민원인 : 비공개
- 민원제기 : 비공개
- 민원요지
 - 종묘제례악 원상보존 조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변조 및 왜곡된 종묘제례악 원상 복원
 - 종묘제례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 시 기재된 왜곡내용 수정

2) 주요 경과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19.04.08.)
 -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 복구해 후손에게 물려주자!”(368명 참여)
- 문화재정책국장 면담 (국립국악원 참석 / '19.04.17.)
 - (면담인 입장)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변조 제기, 복원을 위한 조사단 제안
 - (국립국악원 입장) 기 종결된 사항 있음. 문헌 해석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
연구가 진행되면 열린 자세로 논의 참여하고 적극 협조하겠음.
 - (문화재청 입장) 제기 사항 무형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필요 시 조속히 진행하겠음. 관련 기관·단체·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조정 필요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19.10.28.)

- 주최 : 최경환 국회의원
- 내용
 - 일제강점기 종묘제례악의 왜곡된 현황 소개
 - 현행 종묘제례악 일무와 시용무보 일무 해석의 차이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을 위한 방안 제시 등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민원 관련 조치계획 보고(제15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19.11.15.)
 - 조치계획 :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보고 결과 : 원안 접수
- 종묘제례악 왜곡 관련 관계기관 검토회의 개최('20.02.12.)

3) 관계기관 검토회의 개요

- 회의일시 / 장소 : '20.02.12.(수), 15:00~16:40 / 국립국악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종묘제례악보존회, 국립국악원 관계자 등 19명
- 회의내용 : 종묘제례악 왜곡 논란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방안 논의

4) 회의결과

- 왜곡 주장별 검토내용

왜곡 주장 내용	검토 내용
<p>일제강점기 이왕직 아악부가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여 음(音)의 길이 변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왕직 아악부) 이왕직 아악부가 아악부원 양성소(1920~26)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u>가장 중요한 교육이 종묘제례악 교육이었음.</u> ○(음길이 변형) 음길이 변화 주장의 근간이 세종·세조때 악보라면, 세조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석하면 해소될 수 있음. ○(악장요람) 『악장요람』(일제 이전 순조, 고종대 추정, 국립국악원 소장)에는 <u>정간보가 아니라 율자(율명) 1자마다 등시가로 기보되어 있고, 현재 쉼표 위치에 초록색 동그란 점을 찍어 프레이즈를 나타내어 현재 종묘제례악과 음악적 내용이 일치함.</u> 단, 『악장요람』의 속악가사(俗樂歌詞) 상(上)의 종묘제례악의 용광정명(龍光貞明) 등 일부 제목, 가사는 부전지에 원 가사 위에 개사한 가사를 적어 붙인 부분이 있음. 즉 <u>가사는 일제의 소행으로 고쳐진 것이지만 음악적인 내용은 일제 이전에 변화된 것으로 추정함.</u>

	○(속악원보) 『속악원보』(고종대 중수 추정, 국립국악원 소장)는 그 이전까지 장단이 있던 <u>종묘제례악 뿐 아니라 다른 곡들도 등시가의 음악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남.</u> 즉 <u>고종 대에 궁중에서 편종, 편경과 당피리로 연주하던 소위 당악계 향악이 이미 등시가의 음악으로 변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u>
현행 일무는 『시용무보』(연대미상, 국립국악원 소장) 술어의 구성체계인 삼재적 구조(天地人)와 음양 사상과 다르게 개작됨	○ <u>종묘제례악 일무 창제원리를 밝힌 문헌이 없음.</u> 해당 주장은 문헌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임.
현행 정대업지무는 『시용무보』와 순서가 다르며 검술적 기법이 없음	○ 『악학궤범』(1493)에 정대업지무는 검 2줄, 창 2줄, 궁시 2줄로 구성, 궁시는 조선중기에 사라졌고 창법도 없어짐. 본래 <u>정대업지무는 검 뿐 아니라 창과 궁시를 포함하므로 검술적 기법에 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u>
복색 차이 (『시용무보』-남색, 현행-적색)	○ 대한제국(1897)을 기점으로 남색의 진현관과 피변이 홍주의와 복두로 바뀜. <u>모든 예법이 황제의 예로 바뀌었는데 일무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치에 어긋남.</u>
술어와 동작의 수(8·8·6·9)가 다르고, 술어를 임의로 삽입해 창작 연행	○ 자연스러운 전승과정에서의 변화로 해석

○ 향후 방안

- 종묘제례악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동영상 및 음원 포함)의 자료화

라. 의결사항

-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부분은 수정되었음을 확인함.(출석 10명, 가결 10명)
 - 그 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입장에서 검토함.

11.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의 일무 원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20-3-012

1. '각설이 연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각설이 연희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각설이 연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9.7.25.~12.13.)을 실시하고,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심의안건 상정) ③문화재청장은 조사결과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다. 보고내용

1)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3.)
- '각설이 연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9.7.25.~12.13.)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7.25.~12.13.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결과 : 비공개

4) 조사내용 : 비공개

5) 종합의견

- ‘각설이 연희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결과 국가무형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후속 조치계획

- 전라남도 및 보존회에 결과 통지(‘20.4월)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10명, 가결 10명)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선정 검토

가. 보고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선정('17.04.01)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을 재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다. 보고내용

1) 전승취약종목 개요

- 정의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중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과 사회적 수요가 부족해 전승단절이 우려되어 전승활동 증진을 위한 중점 지원이 필요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389호, '16.03.23)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 선정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67개 종목(단체종목 제외) 중 선정
- 지원내용
 - (맞춤형 추가지원) 재료비, 행사비 등 전승활동 소요비용에 대해 매년 말 1회 지원(보유자 471만원, 전수교육조교 313만원)
 - (전수장학생 선발) 취약종목 보유자 추천 전승자에게 장학금 최대 5년간 지급 (보유자 1인당 최대 3명, 월 27.5만원)
 - (기타)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우선 추진 등

2) 평가회의 선정 전승취약종목 추천 대상

- 전통공연·예술 분야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등 5개 종목

[전승취약종목 선정 비교]

지원기간	'20.04~23.03월(안)	'17.04~'20.03월	비 고
전통공연·예술분야	5종목	5종목	평가점수 상위 5순위

3) 전승취약종목 평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03.05.(목) / 서울 고궁박물관 회의실
- 평가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67개 종목(단체종목 제외)
 - * 기·예능 67종목(전통기술 53종목, 전통공연·예술 14종목)
- 평가 방법 : 전승취약종목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 인적기반(30), 자립도(25), 전승환경(25), 지속 및 발전가능성(20), 종목활성화 노력도(△5~△10)
- 평가결과
 - 전통공연·예술 5종목, 전통기술 26종목 전승취약종목 추천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10명, 가결 10명)